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02

발의연월일: 2022. 6. 22.

발 의 자:유경준·신원식·박 진

홍문표 · 김상훈 · 강대식

정우택 · 노용호 · 이채익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소집통지서는 우편을 통해 송달하거나 전자문서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등에게 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예 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 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0항 삭제 등).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0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u><</u> 삭 제>
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	
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	
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	
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	
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	
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	
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	
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	③ <u>제1항</u>
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	
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⑨ (생 략)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 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 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 한 같다.

① · ② (생 략)

					_
					_
					_
,					
④ (현행과	같음	<u>)</u>			
제15조(벌칙)	1	~	9	(현행고	4
같음)					
<u><삭 제></u>					

①·② (현행과 같음)